

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62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21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내무부의 '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
-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
- 불용물품 감정액 상향조정(안 제17조 제4항)
장부상 취득가격이 “500만원 이상인 물품”을 “1000만원 이상인 물품”으로 함
- 제24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함
- 물품의 분류기준 개정(안 별표 1)
비품 : 내용년수 1년 미만일지라도 “취득 단가 5만원 이상”을 “취득단가 10만원 이상”으로 함

3. 근거법규

- 지방지차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조치 지시(부산시회계 13330-1336, 1994. 10. 1)
-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

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7조 제4항 중 “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”을 “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4조 제1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모품 대장, 도서대장”을 “도서대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“품종구분 기준” 중 (1) 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 8 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물품은 매입·수리·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·수리·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·수리·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 8 조(물품매입 등의 요구) 물품을 매입·수리·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·수리·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</p>
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<u>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~⑧ (생략)</p> <p>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.....</p> <p>⑤~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</p> <p>.....</p>

현 행	개 정 (안)
1.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	1.
2.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	2.
3. 물품카드 등록부	3.
4. <u>소모품대장</u>	4. (삭 제)
5. 도서대장	5.
② <u>분임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</u> <u>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, 중요물품 이력카드,</u> <u>소모품대장,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</u> <u>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</u> <u>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“정수물품”이란 고</u> <u>무인을 찍어야 한다.</u>	②
[별표 1] 물품의 품종, 상태 구분	[별표 1] 물품의 품종, 상태 구분
○ 물품의 종류(생략)	○ 물품의 종류(현행과 같음)
○ 품종구분 기준	○ 품종구분 기준
(1) 비품-①(생략)	(1) 비품-①(현행과 같음)
②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	②
③(생략) 10 만 원
(2) 소모품(생략)	(2) 소모품(현행과 같음)
○ 물품상태 분류기준(생략)	○ 물품상태 분류기준(현행과 같음)